

#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## 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**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**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 )	공무수행 사인( )	설치근거 규정( )
1	학부모회 (PTA)	13	12	교내
2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5	4	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조

## 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관명	공무수행사인( )	위임·탁규정( )
1	없음	없음	없음
2	없음	없음	없음

※ 위임·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관명을 ' ' 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## 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 )	파견근거규정( )
1	없음	없음
2	없음	없음

## 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명	공무수행사인( )	심의·가규정( )
1	없음	없음	없음
2	없음	없음	없음

※ 심의·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' ' 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